
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제2회 학습자의 모집 제2항 규정 준수사항 안내

1.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

*예시: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

2.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

*예시: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학습자 모집을 위한 홍보매체 등에서 학습과정을 소개하면서 학위취득을 위한 일부 학습과목은 연계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고 등록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

3.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

*예시1: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표기하지 않고,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

*예시2: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고, 학습자 모집을 위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

4.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·광고를 하지 말 것

① 거짓광고: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·광고하는 행위

② 과대광고: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·광고하는 행위

*예시1: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'학점은행제 1위 기관', '가장 많은 학습과정 보유' 등으로 표시·광고

*예시2: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학습과정 수강 할인을 '장학금 100% 지급' 등으로 표시·광고

5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(誤認)할 수 있는 대학, 학부, 학과, 정시,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

*예시1: 학습자 모집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에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, 학부, 학과, 정시, 수시 명칭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

*예시2: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, 학부, 학과, 정시, 수시 명칭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

※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7년에도 '학습자 모집'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